「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」 개정

□ 주요 개정사항

○ 경찰청 「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」 상 ‘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’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개정

※ 보조장치(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등) 개발을 위한 유예기간 1년 부여

<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 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
2. 정의 및 구성 <신 설>	2. 정의 및 구성 바.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용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으로 구분되며, 동작 전압과 구동 방식이 상이하기에 호환되지 않는다. 사.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경찰청 「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」의 ‘6.2.3.5 주제어부(MLC) ⇄ 디지털 보행자통합버튼(PIB)’을 따라야 한다.